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87

발의연월일: 2021. 5. 31.

발 의 자 : 이 용 · 지성호 · 조수진

정진석 · 김용판 · 김태흠

전주혜 · 하태경 · 김성원

최형두 · 김승수 · 박성중

서병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 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한 세액감면율에 따라 5년간 세 액감면을 적용하고,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, 중소 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청년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지역의 구분 없이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, 더불어 해당 조세특례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이므로 청년층의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적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함.

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지역 구분 없이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,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,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

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, 제29조의7제1항 및 제30 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 1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"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"를 "대통령령으로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"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"을 "수도권과밀억제권역"으로 한다.

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제 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	제6조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
세액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	세액감면) ①
하는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	
이라 한다) 중 <u>2021년 12월 31</u>	<u>2024년 12월 31</u>
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	<u>일</u>
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(이	
하 이 조에서 "창업중소기업"	
이라 한다)과 「중소기업창업	
지원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	
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	
은 내국인(이하 이 조에서 "창	
업보육센터사업자"라 한다)에	
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	
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	
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	
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	
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	
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	
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	
다. 이하 제6항에서 같다)와 그	
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	
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	
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	

에	대	한	소	득서] [E는	법	인서	에
다	음	각	호	.의	구	분에	II	른	別
율	을	곱현	한	금이	백에	상기	당ㅎ	누는	세
액	을	감민	<u> </u> 한	!다.					

- 1. 창업중소기업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
 - 가.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 기업(이하 "청년창업중소 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: 100분의 100
 - 나.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: 100분의 50
- 2. (생략)
- ② ~ ② (생 략)

제29조의7(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 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2021년 12월 31

1
가. <u>대통령령으로</u>
나. 수도권과밀억제권역
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⑫ (현행과 같음)
29조의7(고용을 증대시킨 기업
에 대한 세액공제) ①
<u>2</u> 024년 12월 31

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대통령 하당 화당 과세연도의 대통령이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중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)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1. • 2. (생략)

② ~ ⑧ (생 략)

제30조(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저소득세 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이하 이 항에서 "청년"이라 한다)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이 조

일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세30조(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
소득세 감면) ①

에서 "중소기업체"라 한다)에 2 012년 1월 1일(60세 이상인 사 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)부터 2021년 12월 31 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 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 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(청년 의 경우에는 5년)이 되는 날(청 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 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,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 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)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(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 0)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(과 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)한다. 이 경우 소득세 감 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 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

<u>2024년 12월 31</u>
일
<u>.</u>

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· 분할·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 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한다.

② ~ ⑨ (생 략)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